

# ‘싼게 비지떡’... 휴가철 ‘불법 숙소’ 주의하세요

아파트·오피스텔 등 숙박업 불법 사이트, 1000곳 이상 버젓이 영업 호텔 등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기’ 소방시설 없고 환불 불가 등 위험 지자체 “관할 부서 달라” 단속 난색

휴가철을 앞두고 아파트·오피스텔 등 숙박업이 금지된 시설에서의 불법 영업이 판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 공유숙박 사이트에 ‘광주시’를 여행지로 설정한 뒤 숙박 시설을 검색하자 1000개 이상의 숙소가 표시됐다. 독채 펜션, 호텔 등인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아파트’로 소개돼 있었다.

해당 숙소들은 ‘40평형’이나 ‘시티뷰’, ‘역세권’ 등을 내세워 홍보하면서도 ‘소음 민원 시 환불 없이 강제 퇴실’, ‘오후 9시 이후 소음주의’ 등을 원칙으로 강조했다. 엄격한 규정에도 1박에 10만원 이하 수

준의 저렴한 가격 탓인지 100여 개에서 많게는 500여 개의 후기들이 달리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의 숙박업은 모두 불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법적 보호를 받기가 힘들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이용한 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연면적과 소방시설 등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고, 자치단체장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정식 등록·승인받아야 한다. 오피스텔은 숙박업 자체가 금지돼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정식 허가 받은 업소는 관내 41개소뿐이다. 더욱이 절반가량은 코로나19 기간 휴·폐업해 실제 영업하는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다.

전남 역시 같은 사이트에 아파트·오피스텔 숙소가 1000곳 이상 노출됐다. 그러

나 전남도에 문의한 결과 도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업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59개소, 이중 실제 영업하는 곳은 57개소였다.

숙박 사이트에 등록된 아파트 형태 숙소 95% 이상은 정식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소’인 셈이다.

불법 숙소는 소방시설, 위생안전 등 점검 대상이 아니고, 재난보상 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배상이 어렵다. 또 환불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진과 다른 방이 제공되는 등 사기를 당할 위험도 크다.

실제 온라인에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다 사기 등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A씨는 한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공유숙박 플랫폼 앱으로 숙소를 예약·카드 결제했으나 호스트가 계좌 입금하면 기존 결제를 100% 환불해 주고 2만원 저렴

한 가격으로 숙소를 대여해 주겠다고 했다”며 “계좌 입금 후 숙박 당일 되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당일 입실 불가 통보를 했고, 예약 날짜를 미뤘지만 이후에도 방을 제공하지 않았다. 수일이 지나도 환불금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B씨는 “가족여행을 위해 숙소를 예약했는데, 예약 당일 호스트에게 전화하자 전화기가 꺼져있었다”며 “현관 비밀번호도 몰라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주인이 부도가 나서 도망간 것 같다’고 말해줬다. 결국 새로운 숙소를 예약해 머물렀다”고 토로했다.

지자체는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관광·농어촌민박 등 숙박업의 종류가 분산돼 시설마다 담당 부처 및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1년에 한 차례 정도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공동주관으로 각 지자체 담당 부서가 미등록 숙소 합동

단속을 시행하지만, 한 번의 단속으로는 곳곳에 난립하는 불법 숙소를 다 잡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합동 단속 외에는 의심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시설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민원 처리는 자치구나 시·군의 몫이다 보니 지역의 전반적인 단속 현황을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

다만, 전남도는 민생사법경찰팀에서 행정철 등에 별도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팀은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5월까지) 2건의 미등록 숙소를 적발, 검찰 송치했다.

한편,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숙소를 운영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 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손본다

교사 중심 용어 탈피... 자율성 강조 학교급별 표준안 개발... 10월 확정 교육청 “공부하는 학교 실현 기대”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 인권과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 조화를 목표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TF팀이 꾸려져 활동을 시작했다. TF팀은 기존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에 대한 선드나 징계 중심으로 구성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TF팀은 먼저 전국 학생생활규정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했다. 개정된 용어를 방지하거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 학사운영과 생활관련 내용이 혼재돼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례 등이 상당했다.

이에 TF팀은 교사 중심의 용어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에 상호협력·관계 지향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규정 구성 면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 △가정교육 주체로서의 보호자 역할과 권리 △협력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는 학생생활규정의 정체성을 기존 징계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생활과 교사 교육, 학부모 지원의 책임과 역할 제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TF팀의 입장이다.

TF팀 관계자는 “전남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는 실천기준 마련에 자발적 참여, 공부하는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구성원 모두의 책무성 강화,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지원을 위한 학교별 자율성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TF팀은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이 현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자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3종도 개발할 계획이다.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은 학생 인권과 안전이 충돌할 경우 안전을 우선순위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 사안 발생 후 대응보다



북구, 민·관·경 합동 공중화장실 점검 광주 북구 기후환경과와 북부경찰, 효령노인복지타운 실버 안심순찰대원들이 7일 북구 본촌동의 한 어린이공원 화장실에서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는 예방에 초점을 맞췄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도 포함한다.

내달 중 학교생활규정 1차 초안이 완성되며,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에는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11월에는 시범학교를 공모·운영하고, 내년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선포해 전남의 모든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부하는 학교’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 제19회 전남보훈대상

전남보훈대상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풍토를 조성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전남보훈대상은 그동안 모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9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 수상자**
- 상이군경 부문 - 배성현(74·고흥)
  - 종상이 배우자 부문 - 김도현(70·여수)
  - 미망인 부문 - 안수복(70·신안)
  - 유족 부문 - 임애실(76·여수)
  - 특별(독립유공자) 부문 - 오세영(81·목포)
  - 특별(무공수훈자) 부문 - 전정남(77·목포)
  - 특별(고엽제) 부문 - 조규석(81·보성)
  - 특별(5·18) 부문 - 양민도(69·나주)

- 시상**
- 각 부문 상패, 상금 140만원 및 부상품
- 시상식**
-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후2시
  - 장 소 : 전남보훈회관 회의실

